

장기투자를 위한 올바른 선택

한국 인니말레이
주식투자신탁-자(1)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한국 인니말레이 주식투자신탁-자(1)”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거하여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가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위험, 주된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투자방침, 가입방법, 투자금 회수 방법, 관련 보수 및 수수료, 과세 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인니말레이 주식투자신탁-자(1)

투자신탁명	한국 인니말레이 주식투자신탁-자(1)
자산운용회사명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해외위탁 자산운용회사명	한국투자증권아시아유한회사 (KOREA INVESTMENT & SECURITIES ASIA LIMITED)
판매회사명 및 상담가능전화번호	<p>■ 증권 판매회사</p> <p>리딩투자증권 (☎ (02)2009-7000, www.leadingkorea.com)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1동 736-1</p> <p>신흥증권 (☎ (02)3787-2114, www.shs.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3</p> <p>한국투자증권 (☎1544-0012, www.truefriend.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p> <p>■ 은행 판매회사</p> <p>중소기업은행 (☎1566-2566, www.kiupbank.co.kr)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5</p> <p>하나은행 (☎1588-1111, www.hanabank.com)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01-1</p> <p>한국산업은행 (☎1588-1500 www.kdb.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p> <p>(주)한국외환은행 (☎1544-3000, www.keb.co.kr)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81</p> <p>판매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행위준칙 등을 준수합니다. ※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 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보전하지 않습니다.</p>
작성기준일	2008년 11월 24일
투자설명서 비치· 공시장소 및 인터넷 게시주소	판매회사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kitmc.com) 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amak.or.kr)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CONTENTS

요약(핵심설명서) : 이 펀드의 주요 특징만을 파악하고 싶다면?

제 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 이 펀드의 기본정보를 알고 싶다면?

1. 투자신탁의 개요

명칭, 상품의 존속기간, 투자신탁유형, 자산운용회사, 최초설정일 등 연혁, 수탁고 추이, 해지사유

2. 투자정보

투자목적, 주요 투자전략, 주요 투자위험,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기준가격, 운용전문인력, 투자실적(연평균 수익률, 연도별 수익률 추이)

3. 수수료·보수, 과세

수익자가 직접 부담하는 수수료, 투자신탁이 부담하는 보수 및 비용,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4.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및 분배

매입, 환매, 이익 등의 분배

제 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 이 펀드를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투자전략, 투자위험, 투자대상, 투자제한

2. 자산의 평가

자산의 평가

3.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4.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및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유의사항,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유의사항,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제 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 이 펀드의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를 알고 싶다면?

1. 자산운용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운용자산규모,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2. 판매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3. 수탁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4. 일반사무관리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5. 채권평가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제 4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투자자의 권리와 공시제도에 대해 알고 싶다면?

1. 수익자의 권리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잔여재산분배,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재판관할,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공시

정기공시 및 보고서, 수시공시

<참고> 펀드 용어 정리 : 투자설명서에 나온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참고> 펀드 용어 정리

※ 본문에 기울임체로 기재된 단어들은 투자설명서 마지막의 '참고 펀드 용어 정리' 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핵심설명서)

I 투자신탁의 개요(☞ 본문 6쪽)

1. 명 칭 : 한국 인니말레이 주식투자신탁-자(1)
2. 펀드존속기간 : 추가형이어서 별도의 종료일이 없습니다.
3. 분 류 : 증권투자신탁, 주식형·추가형·개방형·종류형·모자형(자투자신탁)
4. 자산운용회사 : 한국투자신탁운용(주)[해외위탁운용회사:한국투자증권아시아유한회사]

II 투자정보(☞ 본문 7~12쪽)

구 분	주 요 내 용														
1. 투자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주식 등에 증장기적으로 투자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투자수익률을 추구 *[(Jakarta Comp Index X 45%)+(KL Comp Index X 45%)]+[CallX10%] ☞ 한국투자신탁운용 홈페이지(www.kitmc.com)에서 전월말 기준 비교지수의 변동률 확인 가능 														
2. 주요 투자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두투자신탁 수익증권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 ■인도네시아주식-모:신탁재산의 60%이상을 인도네시아 주식에 투자 ■말레이시아주식-모:신탁재산의 60%이상을 말레이시아 주식에 투자 - 환율변동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환헤지전략을 실시하지 아니하므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됨 														
3. 주요 투자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의 경제여건 및 주식의 가격변동, 환율변동 등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경제여건 및 주식시장 현황은 본문 참조)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5등급 중 1등급으로 매우 높으므로 높은 투자수익을 추구하고 높은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경제여건 변화와 주식의 가격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증장기 투자자에게 적합 														
5. 기준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투자기구(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 -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 홈페이지(www.kitmc.com)에서 확인 가능 														
6. 운용전문인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rowspan="2" style="width: 15%;">성명</th> <th rowspan="2" style="width: 10%;">나이</th> <th rowspan="2" style="width: 10%;">직위</th> <th colspan="2" style="width: 25%;">운용현황[2008.01.07]</th> <th rowspan="2" style="width: 20%;">주요운용경력</th> </tr>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style="width: 10%;">운용중인 펀드수</th> <th style="width: 15%;">운용중인 자산규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한규성</td> <td style="text-align: center;">41세</td> <td style="text-align: center;">팀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48개</td> <td style="text-align: center;">14,936억</td> <td style="text-align: center;">-글로벌운용 8년 (2000년~현재)</td> </tr> </tbody> </table> <p>*이 펀드가 투자하는 모펀드의 외국통화표시자산의 운용은 한국투자증권아시아유한회사의 펀드매니저 “Albert NG” 이 운용</p>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2008.01.07]		주요운용경력	운용중인 펀드수	운용중인 자산규모	한규성	41세	팀장	48개	14,936억	-글로벌운용 8년 (2000년~현재)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2008.01.07]		주요운용경력							
		운용중인 펀드수	운용중인 자산규모												
한규성	41세	팀장	48개	14,936억	-글로벌운용 8년 (2000년~현재)										
7.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실적은 과거성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본문 12~16쪽)

1. 수수료 및 보수

구 분		부담비율(연간,%)			
종 류		종류 A	종류 C	종류 C-e	
수익증권 판매 기준		제한없음	제한없음	온라인가입자	
수익자가 직접 부담하는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¹⁾	납입금액의 1.0%	-	-	
	환매수수료 ¹⁾ (이익금기준)	30일 미만 : 이익금의 10%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 및 비용 (순자산총액 기준)	보수	운용회사보수	연 0.800%	연 0.800%	연 0.800%
		판매회사보수	연 1.000%	연 1.900%	연 1.615%
		기타보수	연 0.078%	연 0.078%	연 0.078%
		보수합계	연 1.878%	연 2.778%	연 2.493%
	기타비용 ²⁾	매매수수료 등			
총보수·비용비율 ³⁾		연 1.878% +기타비용	연 2.778% +기타비용	연 2.493% +기타비용	

주 1)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30일 / 90일 미만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

2)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3) 총보수·비용비율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냄

2. 과세 : 수익자는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손익을 제외한 과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2008.11.24. 현재 개인 15.4%, 법인 14.0% 원천징수)**을 부담합니다.-세부사항은 본문참조
3. 매입·환매절차 : 이 수익증권의 매입·환매는 판매회사의 영업시간()에만 가능

구 분	오후 5시 이전	오후 5시 경과 후
매 입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영업일(D+1)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제3영업일(D+2)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환 매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4영업일(D+3)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제8영업일(D+7) 에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5영업일(D+4)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제9영업일(D+8) 에 환매대금을 지급

※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의 상담센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투자설명서 본문 참조)**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회사) _____ (점포명) _____ (판매직원/취득권유인 직위 및 성명) _____ (은)는
(고객성명) _____ 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주요내용(환율변동 위험 포함)을 설명하였습니다.

판매직원/취득권유인 _____ 서명 또는 (인)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I.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한국 인니말레이 주식투자신탁-자(1)

2. 펀드존속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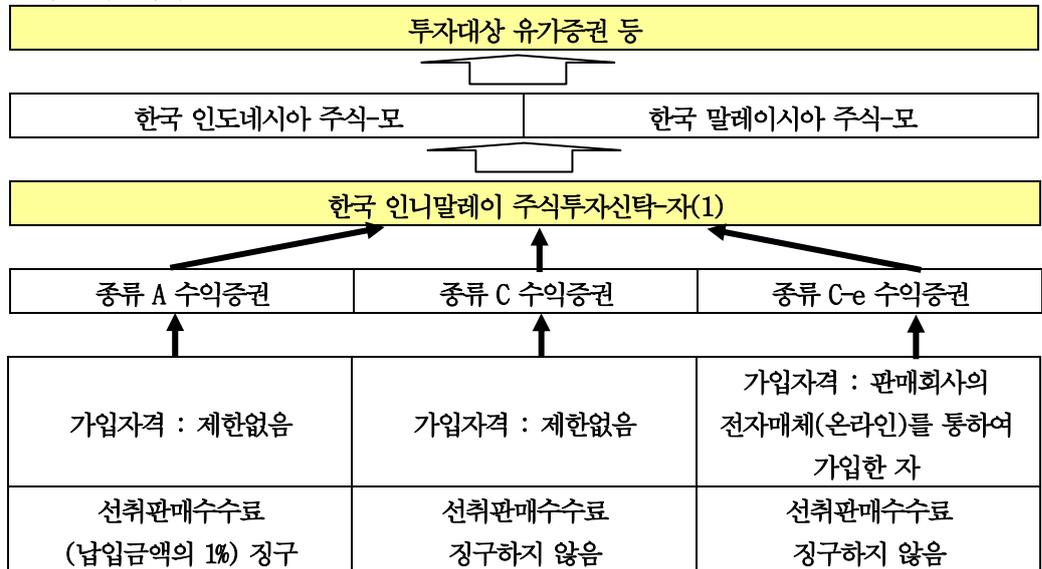
이 상품은 추가형 상품으로 종료일이 따로 없습니다.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

3. 분류

■ 한국 인니말레이 주식투자신탁-자(1)

증권투자신탁, 주식형·추가형·개방형·종류형·모자형(자투자신탁)

※ 당해 투자신탁의 구조



※ 투자대상 모투자신탁의 분류

■ 한국 인도네시아 주식투자신탁-모

증권투자신탁, 주식형·추가형·개방형·모자형(모투자신탁)

■ 한국 말레이시아 주식투자신탁-모

증권투자신탁, 주식형·추가형·개방형·모자형(모투자신탁)

4. 자산운용회사

한국투자신탁운용(주)

- 해외위탁

자산운용회사

※ 투자대상 모투자신탁의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 한국투자증권아시아유한회사(KOREA INVESTMENT & SECURITIES ASIA LIMITED)

↳ 업무위탁 범위 : 당해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국통화표시자산(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주식)에 대한 운용업무 위탁

☞ 단, 운용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한국투자신탁운용(주)에 있습니다.

5.최초설정일 등 연혁

■ 한국 인니말레이 주식투자신탁-자(1)

최초설정일 : 2008.01.07

※ 투자대상 모투자신탁의 연혁

■ 한국 인도네시아 주식투자신탁-모

최초설정일 : 2008.01.07

■ 한국 말레이시아 주식투자신탁-모

최초설정일 : 2008.01.07

6.수탁고 추이

해당사항 없음

7.해지사유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3.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II. 투자정보

1.투자목적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주식 등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여 투자자산의 가치 증대

■ 한국 인니말레이 주식투자신탁-자(1)

-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신탁재산을 “한국 인도네시아 주식투자신탁-모 및 한국 말레이시아 주식투자신탁-모”(이하 “모투자신탁”이라 함) 수익증권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투자수익률을 추구하는 해외 주식형투자신탁입니다.
-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수탁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비교지수 = [(Jakarta Comp Index X 45%) + (KL Comp Index X 45%)] + [Call X 10%]

☞ 한국투자신탁운용 홈페이지(www.kitmc.com)에서 전월말 기준 비교지수의 변동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월말 기준 비교지수의 변동율이란 전월 초 비교지수 대비 전월말 비교지수의 증감분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투자자는 동 펀드의 전월말 기준 수익률 변동율과 비교지수의 변동율을 비교함으로써 매입하신 펀드가 비교지수에 비해 잘 운용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투자대상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 한국 인도네시아 주식투자신탁-모

- 이 투자신탁은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를 기초로 해외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Depositary Receipt)를 포함함) 및 인도네시아에 본사를 둔 회사가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여 투자대상주식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고, 국내채권 및 어음 등에의 투자를 통하여 추가적인 이자소득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한국 말레이시아 주식투자신탁-모

- 이 투자신탁은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를 기초로 해외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Depositary Receipt)를 포함함) 및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회사가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여 투자대상주식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고, 국내채권 및 어음 등에의 투자를 통하여 추가적인 이자소득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

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주요투자전략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

■ 한국 인니말레이 주식투자신탁-자(1)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 시장상황에 따라 각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 신탁약관상 투자한도내에서 자산배분전략을 구사할 계획입니다.
-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유동성자산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10%범위내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단,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 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1) 환위험 관리전략

- 자산운용회사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환헤지전략을 원칙적으로는 실행하지 아니할 계획이므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다만, 향후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환헤지전략을 실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환헤지전략의 실행여부 및 환헤지 실행비율 등에 따라 일부 환율변동위험을 헤지할 수 있습니다.

※ 환헤지 : 원칙적으로는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음. 다만, 향후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환헤지가 가능한 모투자신탁 외화자산의 경우, 환헤지 실행 가능

-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국통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에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 투자대상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한국 인도네시아 주식투자신탁-모

■ 한국 말레이시아 주식투자신탁-모

(1) 해외 유가증권 투자전략

- 자산운용회사는 적정 유동성을 제외하고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를 기초로 해외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Depository Receipt)를 포함함) 및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회사가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 자산운용회사는 당해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운용업무 등을 홍콩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아시아유한회사”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 √ 시장상황에 따라 주식 및 채권 등에의 투자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용
 - √ Top-down approach방식 및 Bottom-up approach방식을 병행하여 융통성있게 포트폴리오 구성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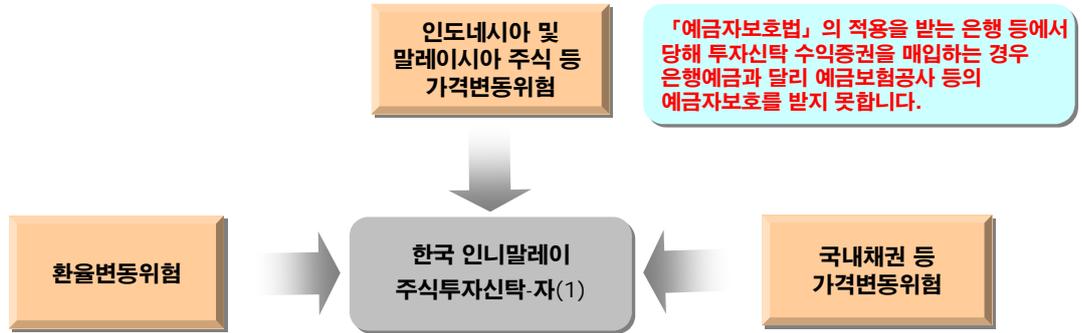
(2) 국내 유가증권 투자전략

-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재산의 일부를 국공채, 통화안정증권, 회사채 등을 위주로 투자·운용하여 추가적으로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추구할 예정입니다.

※ 투자전략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 투자전략 및 투자 위험 등” 중 “1. 투자전략”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 주요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위험 및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주식가격변동위험

- 이 투자신탁은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를 기초로 해외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Depository Receipt)를 포함함) 및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회사가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써 투자대상국가 또는 투자대상기업의 주식가격변동에 따라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의 특별한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 유가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2) 환율변동위험

- 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외국통화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신탁재산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주식 등은 인도네시아 루피(Rupiah), 말레이시아 링깃(Ringgit) 등 외화로 표시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해당 통화 대비 한국 원화의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환헤지전략을 원칙적으로는 실시하지 아니할 계획이므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3) 국내 채권 등 가격변동위험

-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신탁재산의 일부가 국내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되며, 금리변동에 따라 동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격은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운용에 의한 손익은 모두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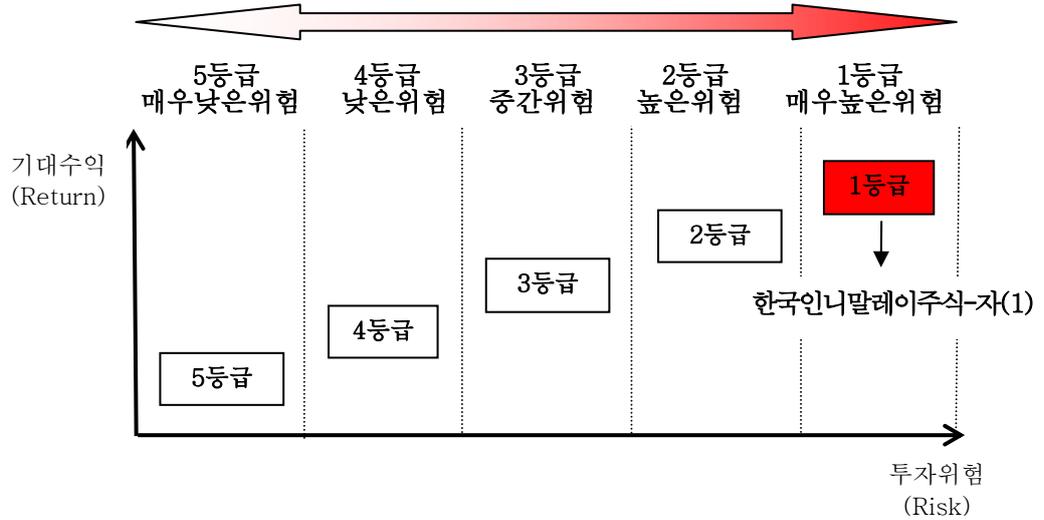
※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1. 투자전략 및 투자 위험 등” 중 “2. 투자위험”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원본손실가능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환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집중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여타 자산보다 변동성이 높은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주식 등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고 있고,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5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1등급으로 분류됩니다.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경제여건 변화와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주식의 가격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주식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또한,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 증권을 발행하여 수익자의 투자성향에 부합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자의 가입자격,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익증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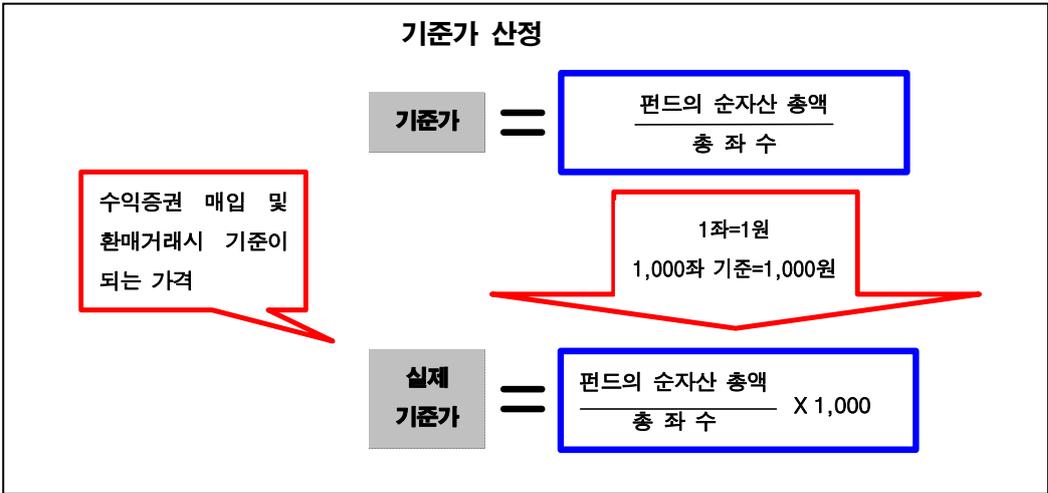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상품예시^㉞]

위험등급	분류기준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운용중인 투자신탁 상품(예시)
1등급	매우높은 위험	- 한국 월드와이드 그레이터차이나 주식투자신탁 1호 - 한국 네비게이터 주식투자신탁 1호
2등급	높은위험	- 한국 부자아빠 성장A 주식혼합증권투자신탁 K-1호 - 한국 노블 월지급식 연속분할매매 주식혼합투자신탁 1호
3등급	중간위험	- 한국 월드와이드 미리미리 채권혼합투자신탁 1호 - 한국 패스파인더A 채권혼합투자신탁 1호
4등급	낮은위험	- 한국 부자아빠 마스터 중기 채권증권투자신탁 A-1호 - 한국 부자아빠 회사채 채권증권투자신탁 A-1호
5등급	매우낮은 위험	- 한국 부자아빠 마스터 중기 국공채증권투자신탁 A-1호 - 신중 MMF 1-M호

(주) 상기 예시는 당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인 한국투자신탁운용 내부의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예시입니다. 따라서 다른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모자형투자신탁에서는 자투자신탁에서 모아진 신탁재산을 모두자신탁에서 통합하여 운용합니다. 그러나, 모두자신탁은 자투자신탁과는 달리 투자신탁보수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모두자신탁과 자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당해 투자신탁은 법 제138조에 의거하여 판매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수수료 등 종류별로 부과되는 비용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않습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자산운용회사(www.kitmc.com)· 판매회사·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6. 운용전문인력

성 명	나 이	소속부서	직 위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한규성	41세 (1967.12.5)	해외투자팀	팀장 운용역	- 연세대 정치외교학, University of Connecticut MBA - 영국 머큐리자산운용사 연수 - 미국선물거래증개사, 운용전문인력 - 글로벌운용 8년 (2000년 ~ 현재)

※ 투자대상 모두자신탁의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의 운용전문인력

성 명	소속부서	직 위	운용중인 자산규모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Albert NG	자산운용팀	CIO (대표 펀드 매니저)	920만 달러 [2007.12.21일 기준]	- Chinese Univ of HK, CFA, FRM -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투자경력 17년 - MEAG Hong Kong Ltd, Unicapital (Hong Kong) Limited, DBS Asse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Dresdner RCM Global Investors Asia Ltd, Daiwa Investment Advisors (HK) Limited)

※ 투자대상 모두자신탁의 외국통화표시자산의 운용은 “한국투자증권아시아유한회사”의 펀드 매니저 “Albert NG”이 운용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의 “I. 자산운용회사” 중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투자실적

-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연평균수익률 - 해당사항 없음

나.연도별수익률 추이 - 해당사항 없음

Ⅲ. 수수료 · 보수, 과세

1.수익자가 직접부담하는 수수료

구 분	부담비율 ^㉞		비고 (부담시기)
	종류 A 수익증권	종류 C 수익증권 종류 C-e 수익증권	
선취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	-	매입시
후취 판매수수료	-	-	-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기준 징수)	30일 미만 : 이익금의 10%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환매시1회

(주) 종류A 수익증권 및 종류C 수익증권은 가입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종류C-e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에게만 판매됩니다.
(다만, 종류C 수익증권 및 종류C-e 수익증권의 경우 판매보수가 종류A 수익증권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2.투자신탁이 부담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부담비율(순자산총액의 %)(연간)			비고 (부담시기)
	종류 A 수익증권	종류 C 수익증권	종류 C-e 수익증권	
자산운용회사 보수	0.800%	0.800%	0.8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1.000%	1.900%	1.615%	
수탁회사 보수	0.060%	0.060%	0.060%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18%	0.018%	0.018%	
기타비용 ^(주1)	매매수수료 등	매매수수료 등	매매수수료 등	사유발생시 지출
총 보수 · 비용 비율^(주2)	1.878% + 기타비용	2.778% + 기타비용	2.493% + 기타비용	-

(주 1) 기타비용은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해외유가증권 등의 해외보관대리인에 대한 보관수수료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등에 해당합니다.
(주2) 총보수 ·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액(보수 ·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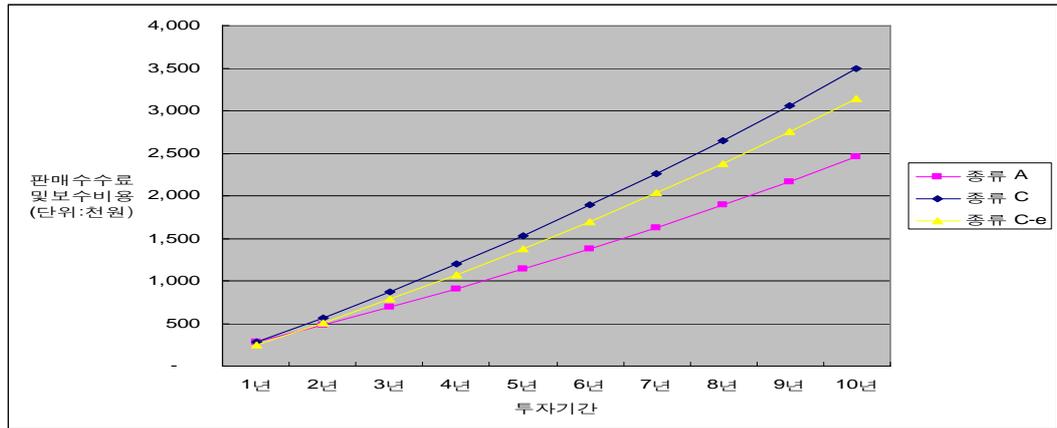
(단위 : 천원)

투자기간	1년	3년	5년	10년
종류 A 수익증권	287	691	1,137	2,461

종류 C 수익증권	278	876	1,535	3,494
종류 C-e 수익증권	249	786	1,378	3,136

(주)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투자기간별로 산출한 것임.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음.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기간별 투자자 부담 비용 추이[수익증권 종류별]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모두 환급을 받고 있으며,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

환급비율

환급비율 : (사업연도 총소득 - 국내비과세소득)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 으로 함.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거주자에 한하여 투자신탁이 투자

하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도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국내외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 (나)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의 평가 이익보다 2007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외국상장주식의 평가 손실이 더 큰 경우 (∵ 2007년 6월 1일 이전 가입한 수익자에 한하여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 평가 이익부분은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 한도세율 25%)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및 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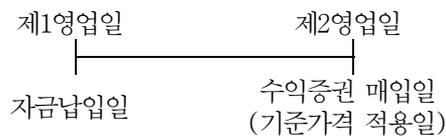
1.매입

(1) 매입방법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가) 17시[오후 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



- (나) 17시[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간접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봅니다.

※ 단,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1. 매입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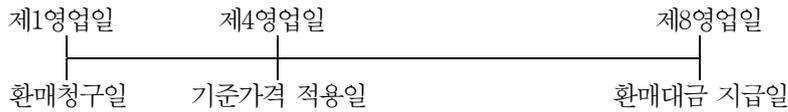
2.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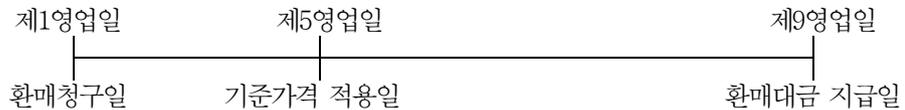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나) 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간접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등으로 환매에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환매제한, 환매연기, 부분환매 등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2. 환매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구 분	부담비율		비고 (부담시기)
	종류 A 수익증권	종류 C 수익증권 종류 C-e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기준 징수)	30일 미만 : 이익금의 10%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환매시1회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시[오후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에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3.이익등의 분배

- ①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③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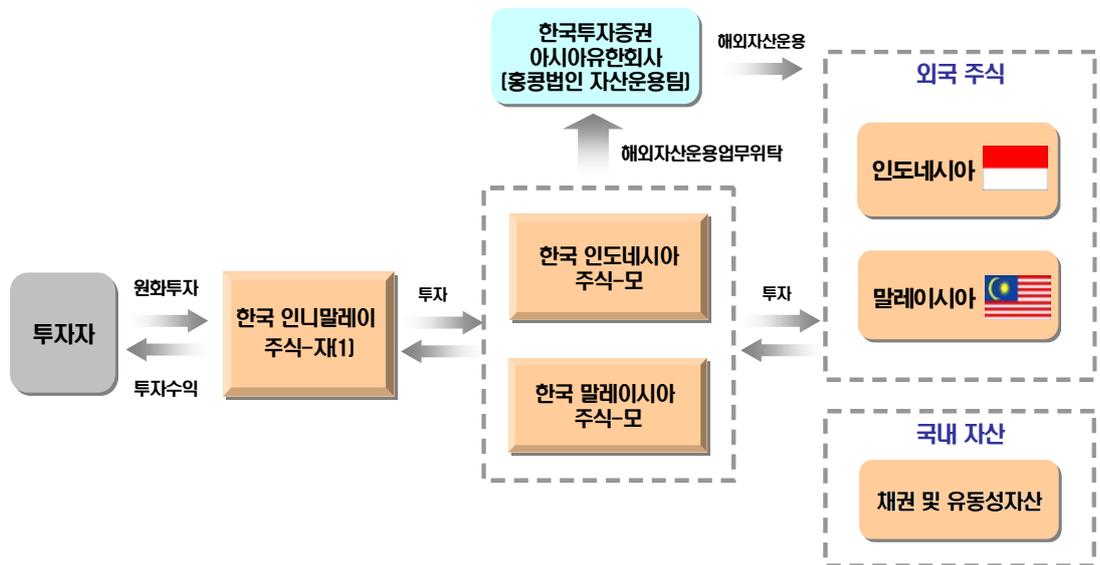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분배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3. 분배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 한국 인니말레이 주식투자신탁-자(1)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 시장상황에 따라 각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 신탁약관상 투자한도내에서 자산배분전략을 구사할 계획입니다.
-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유동성자산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10%범위내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단,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 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1) 환위험 관리전략

원칙적으로는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음

- 자산운용회사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환헤지전략을 원칙적으로는 실시하지 아니할 계획이므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다만, 향후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환헤지전략을 실시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환헤지전략의 실행여부 및 환헤지 실행비용 등에 따라 일부 환율변동위험을 헤지할 수 있습니다.

※ 환헤지 : 원칙적으로는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음. 다만, 향후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환헤지가 가능한 모투자신탁 외화자산의 경우, 환헤지 실행 가능

※ 투자대상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한국 인도네시아 주식투자신탁-모
- 한국 말레이시아 주식투자신탁-모

(1) 해외 유가증권 투자전략

시장상황에 따라 주식 및 채권 등의 투자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용

- 자산운용회사는 적정 유동성을 제외하고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를 기초로 해외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Depositary Receipt)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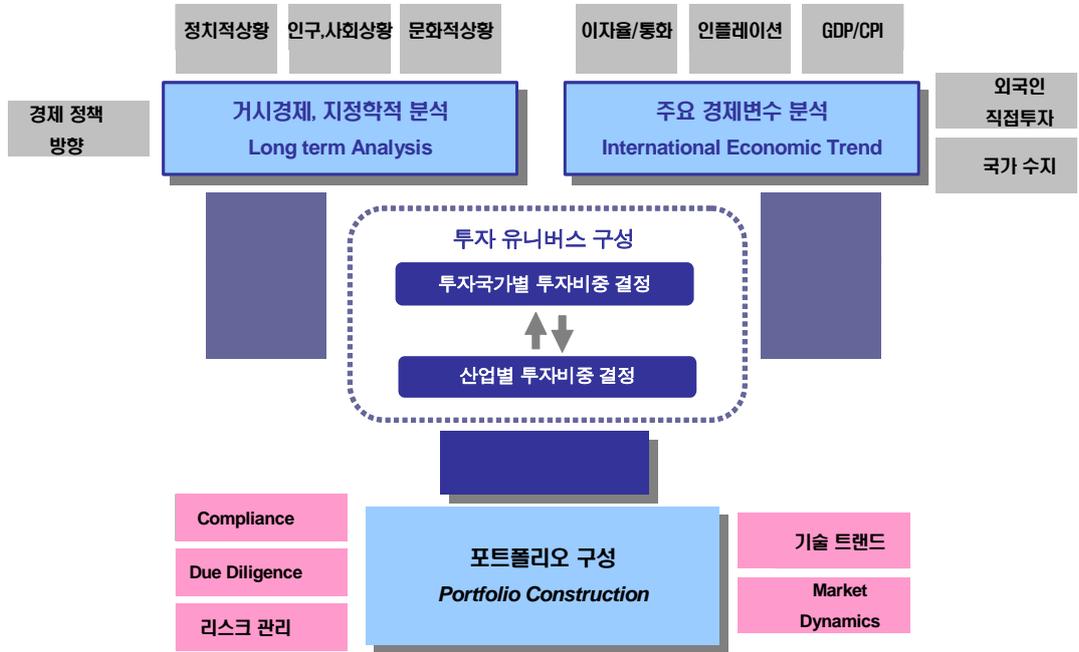
함) 및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회사가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에 투자할 예정이며, 운용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산운용회사는 당해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운용업무 등을 홍콩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아시아유한회사”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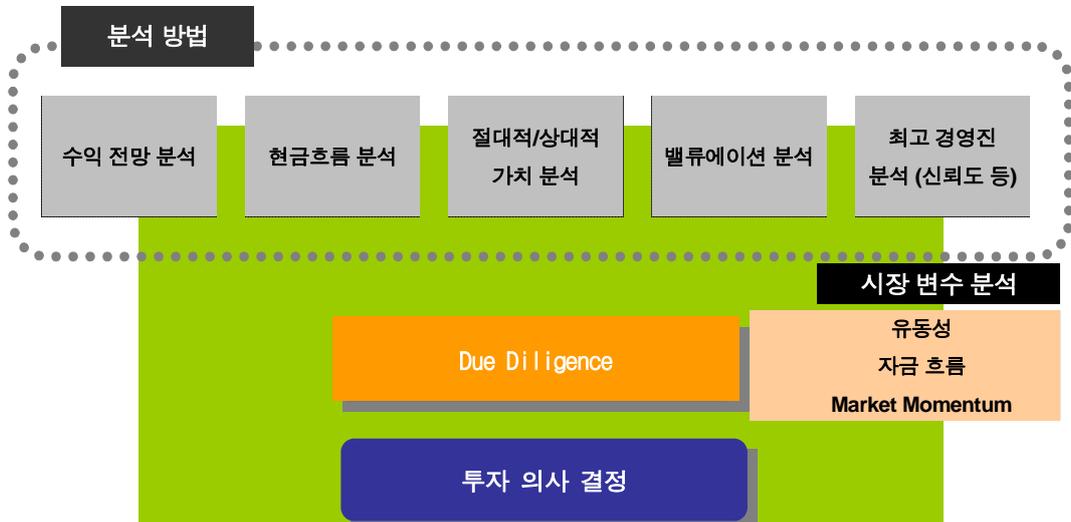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변동시 자산운용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예정임)

- √ 시장상황에 따라 주식 및 채권 등의 투자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용
 - 국가별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분야에 주로 투자 예정
 -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관련 분야
 - Palm Oil, 천연고무, 목재 등 원자재 산업 분야
 - 정부주도하의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Infrastructure 분야
 - 소득증가의 직접적 혜택을 받을 금융 및 서비스 분야 등
 - 내재가치가 높고 상대적 저평가 종목에 장기적으로 투자 예정
- √ Top-down approach방식 및 Bottom-up approach방식을 병행하여 융통성있게 포트폴리오 구성 예정

○ Top-down approach방식



○Bottom-up approach방식



(2) 국내 유가증권 투자전략

국공채, 통화안정증권, 회사채 등을 위주로 투자

-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재산의 일부를 국공채, 통화안정증권, 회사채 등을 위주로 투자·운용하여 추가적으로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추구할 예정입니다.

2.투자위험

(1)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표는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중요도 순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주식가격변동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를 기초로 해외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Depositary Receipt)를 포함함) 및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회사가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써 투자대상국가 또는 투자대상기업의 주식가격변동에 따라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주식가격과는 별개로 투자대상국가 또는 투자대상기업의 주가가 격이 하락하는 경우 당해 투자신탁의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의 특별한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 유가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외국통화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신탁재산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환헤지전략을 원칙적으로는 실시하지 아니할 계획이므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다만, 향후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환헤지전략을 실시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환헤지전략의 실행여부 및 환헤지 실행비율 등에 따라 일부 환율변동위험을 헤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속성상 모든 외국통화의 변동성을 완전히 헤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내채권 등 가격변동위험	모투자신탁 신탁재산의 일부가 국내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되며, 금리변동에 따라 동 자산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유가증권,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유가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주식과 관련된 파생상품의 유동성 부족으로 신탁재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	투자하는 국가(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의 정치적, 법적, 경제적 또는 규제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위험에 노출됩니다.
파생상품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효과(지렛대 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조기환매위험	수익자가 환매요청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가 부과되

	며 동 환매수수료는 신탁재산으로 귀속됩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에 ‘IV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의 ‘2. 환매관련 유의사항/(2) 수익증권의 환매연기사유’ 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2)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현황

■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내수 중심의 안정적 성장 기반 구축

- Oil & Gas : 아시아 매장량의 22%, CPO(Crude Palm Oil) : 전세계 생산량의 85% 차지
- 석탄, 천연목재, 주석, 보크사이트 등 각종 광물 다량 보유
- 2002년 이후 5%~6%대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점차 민간소비가 확대되는 한편,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 대내외 투자 확대 등으로 내수의 성장 기여도 강화
-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역내 교역 확대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경기 둔화와는 차별화되는 양상

■ 정치, 경제적으로 이슬람 금융 및 동남아 교역 허브 구축에 주력

- 국제유가의 강세 지속으로 중동으로부터 막대한 오일 머니 유입
- 발달된 이슬람 금융시장의 확충을 통해 금융허브로의 도약
-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동남아 교역의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 각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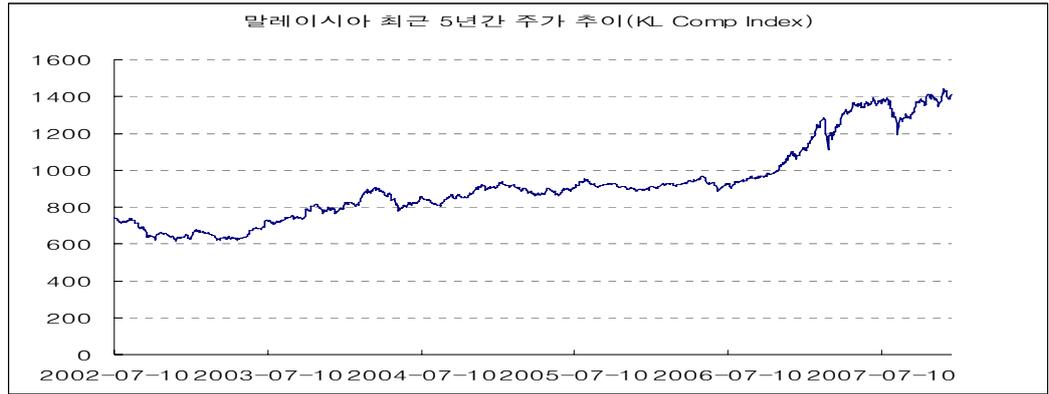
○ 인도네시아 현황

위치	동남아시아	인구	2.45억명(세계 4위)
수도	자카르타	면적	190.7만 Km ² (세계 16위, 한반도의 9배)
명목GDP(1인당GDP)	3,502억 달러(1,427달러)	화폐	루피(Rupiah)



○ 말레이시아 현황

위치	동남아시아	인구	2,660만명
수도	쿠알라룸푸르	면적	33만 Km ² (한반도의 1.5배)
명목GDP(1인당GDP)	1,489억 달러(5,598 달러)	화폐	링깃(Ringgit(RM)), 말레이시아달러 (Malaysian Dollar(M\$))



3. 투자대상

*투자비율은
신탁재산총액에
대비하여 산출

■ 한국 인니말레이 주식투자신탁-자(1)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요 내용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0%이하	- 신탁약관 제2조제2항의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인도네시아 주식투자신탁-모 한국 말레이시아 주식투자신탁-모
유동성자산	10%이하	-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 상기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단,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음
통화관련 장내·외파생상품		-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가 능 -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외국의 선물거래소에 상장된 통화선물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외국의 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통화선물 및 통화스왑 - 통화관련장내파생상품의 거래는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5%이하
		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
<p>- 모수익증권, 유동성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부터 1월간 2.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신탁약관 제3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한국 인도네시아 주식투자신탁-모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요 내용
외국주식	60%이상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 중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및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중 동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한 성질을 구비한 것(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이를 기초로 해외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Depository Receipt)를 포함한다) 및 인도네시아에 본사를 둔 회사가 해외에서 발행한 것본사를 둔 회사가 해외에서 발행한 것
채권	40%이하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함)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어음	40%이하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 또는 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증정한 어음·채무증서로서 신용평가등급이 A3-이상인 것
금리스왑거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수익증권등	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 통화로 표시되어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을 포함함) - 자산총액의 100분의 95이상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이하 “외국자산”)에 운용되는 외국 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95이상이 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위탁하는 방법으로 외국자산에 운용되는 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0%이하 - 법13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증권(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되어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을 포함함)에 대하여는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증권의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이하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 옵션,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포함함)	
-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거래는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5%이하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50%이하	
투자증권의 차입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	
- 자산운용회사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자산운용회사는 법원의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채권 및 기업어음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외국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 및 금리스왑거래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 4 호 및 제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신탁약관 제3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한국 말레이시아 주식투자신탁-모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요 내용
외국주식	60%이상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 중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및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중 동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한 성질을 구비한 것(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이를 기초로 해외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Depository Receipt)를 포함함)

		다) 및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회사가 해외에서 발행한 것 본사를 둔 회사가 해외에서 발행한 것
채권	40%이하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함)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어음	40%이하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 또는 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증정한 어음·채무증서로서 신용평가등급이 A3-이상인 것
금리스왵거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	
수익증권등	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되어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을 포함함) - 자산총액의 100분의 95이상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이하 “외국자산”)에 운용되는 외국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95이상이 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위탁하는 방법으로 외국자산에 운용되는 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0%이하 - 법13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증권(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되어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을 포함함)에 대하여는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증권의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이하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포함함)	
-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거래는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5%이하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50%이하	
투자증권의 차입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		
- 자산운용회사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자산운용회사는 법원의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채권 및 기업어음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외국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 및 금리스왑거래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 4 호 및 제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신탁약관 제3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4.투자제한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한국 인니말레이 주식투자신탁-자(1)

구 분	내 용	적용 제외
이해관계인 투자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	-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 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 1월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매 1월이 되는 날 전에 이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위험평가액” 이라 한다]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후순위채 투자	-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한국 인도네시아 주식투자신탁-자(1)

■ 한국 말레이시아 주식투자신탁-자(1)

구 분	내 용	적용 제외
이해관계인 투자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	

	<p>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나.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및 어음(법 제2조 제7호의 투자증권에 해당하는 어음에 한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 법시행령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채무증서 및 어음, 동조항의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에 한한다), 채무증서 및 어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6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것에 한한다) 및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매일의 당해주식의 증가의 총액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증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일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한다.</p> <p>-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파생상품 투자	-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 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 1월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매 1월이 되는 날 전에 이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위험평가액” 이라 한다]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계열회사 주식투자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가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채 투자	-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기타 자세한 투자제한 사항은 신탁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 자산의 평가

1. 자산의 평가

-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자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산의 종류별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등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상장·비상장채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발행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법 제140조에 따른 모자형간접투자기구의 모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간접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해당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 최종시가
외국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된 외국간접투자증권은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 외화표시유가증권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자산을 한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평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이 경우 외국환중개회사가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미리 고시한 환율(외국의 뉴스통신사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외국환중개회사에 제공하는 환율이 있는 경우 그 환율을 포함함)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자산평가위원회에서 그 환율을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음. 단, 외국환중개회사로부터 관련 환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된 환율정보 이용 가능
부동산	가. 부동산의 취득 후 1년 이내의 경우 : 취득가격. 다만, 부동산의 시장가치·자산가치의 현저한 변동 등이 발생한 때에는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간접투자자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나목에 따라 평가할 수 있음. 나. 부동산의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산정하는 가액

- 기준가격 계산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간접투자자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Ⅲ.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1.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가. 투자증권 거래

구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주식	1. 기본원칙 - 간접투자재산의 이익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중개회사 선정 2. 기여도 평가방법 - 매격월 주식운용역, 스트래트지스트, 애널리스트, 트레이더가 중개회사의 기업분석 자료 등 펀드운용 및 매매업무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 3. 위탁배정 - 중개회사별로 기여도 평가점수에 따라 배정비율을 결정하고 그 비율에 맞추어 중개회사 지정
채권등	1. 기본원칙 - 간접투자재산의 이익도모 기여도에 따라 중개회사 선정 2. 기여도 평가방법 - 매분기 채권운용역, 스트래트지스트, 애널리스트, 트레이더가 중개회사의 재무건전성과 기업분석 자료 등 펀드운용 및 매매업무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 3. 위탁배정 - 중개회사별로 재무건전성 및 기여도 평가점수에 따라 배정그룹을 결정하고 그 그룹 내에서 중개회사 지정

나. 장내파생상품 거래

구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주식관련	1. 기본원칙 - 간접투자재산의 이익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중개회사 선정 2. 기여도 평가방법 - 매격월 주식운용역, 스트래트지스트, 애널리스트, 트레이더가 중개회사의 기업분석 자료 등 펀드운용 및 매매업무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 3. 위탁배정 - 중개회사별로 기여도 평가 점수에 따라 중개회사 Pool을 구성한 후 Pool 내에서 중개회사 지정
채권관련등	1. 기본원칙 - 간접투자재산의 이익도모 기여도에 따라 중개회사 선정 2. 기여도 평가방법 - 매분기 채권운용역, 스트래트지스트, 애널리스트, 트레이더가 중개회사의 재무건전성과 기업분석 자료 등 펀드운용 및 매매업무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 3. 위탁배정 - 중개회사별로 재무건전성 및 기여도 평가점수에 따라 배정그룹을 결정하고 그 그룹 내에서 중개회사 지정

Ⅳ.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사항

- 특이사항 없음

2. 환매관련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직접 환매청구하거나 판매회사

유의사항

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6영업일 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제7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2)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법령과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상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 구체적인 사유는 신탁약관 제26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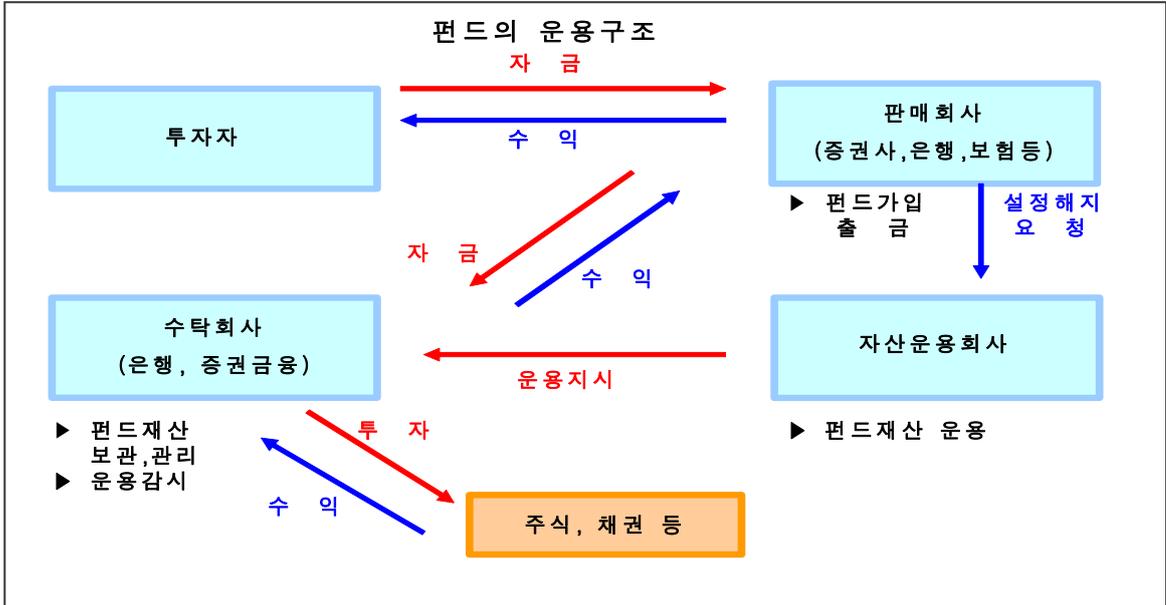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3)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3.분배관련 유의사항

- 특이사항 없음



I.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투자신탁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02-3276-4700)
회사연혁	- 1974. 7.16 : 한국투자신탁 설립 - 2000. 6. 4 : 한국투자신탁 증권사 전환 - 2000. 6.28 : 한국투자신탁운용사 설립 - 2005. 4. 1 : 동원금융지주그룹 편입 (상호변경: 한국투자금융지주) - 2005. 7. 4 : 동원투자신탁운용(주)를 흡수합병

2.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3.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자산운용회사의 의무와 책임

- 자산운용회사의 선관의무
 -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회사의 책임
 -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업무위탁

□ 기준가격계산업무의 위탁

-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해서는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서 보수를 지급합니다.
- 업무를 수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자산운용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수익자명부 작성업무의 위탁

-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업무를 수탁받은 증권예탁결제원이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자산운용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업무위탁

이 투자신탁의 외국통화표시자산(인도네시아 주식 및 말레이시아 주식)에 대한 운용업무는 투자일임계약에 의거 “한국투자증권아시아유한회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위탁운용에 관한 사항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변동시 자산운용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예정임)

①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운용업무의 위탁

- 자산운용회사는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해 다음 업무를 위탁합니다.
- . 운용 및 운용지시업무 / 조사분석업무 / 단순매매주문업무

②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업무위탁의 책임

-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자산운용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개요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명	한국투자증권아시아유한회사 (KOREA INVESTMENT & SECURITIES ASIA LIMITED)
주요 주주	한국투자증권주식회사 100% 소유
회사연혁	- 설립일자 : 1997.7.11 - 자본금 : 5백만 달러 - 임직원 : 15명 - 주소 : Suite 2110, Jardine House, 1 Connaught Place, Central, Hong Kong
운용자산규모	920만 달러 [2007.12.21일 기준]

※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위탁운용비용은 당해 자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보수에서 지급합니다.

**모투자신탁의
운용업무위탁**

**3. 최근 2개사업연도의
요약 재무내용**

(단위:백만원)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항목	제7기 (2007.3.31)	제6기 (2006.3.31)	항목	제7기 (2006.4.1~ 2007.3.31)	제6기 (2005.4.1~ 2006.3.31)
고정자산	6,620	6,128	영업수익	45,095	27,060
유동자산	85,044	72,584	영업비용	21,356	18,074
자산총계	91,664	78,712	영업이익	23,739	8,986
고정부채	234	125	영업외수익	54	399
유동부채	7,090	5,032	영업외비용	1,107	318
부채총계	7,324	5,157	경상이익	22,686	9,067
자본금	66,000	66,000	특별손익	-	-
자본잉여금	788	527	세전순이익	22,686	9,067
이익잉여금	17,546	7,290	당기순이익	16,172	6,423
자본조정	6	-262			
자본총계	84,340	73,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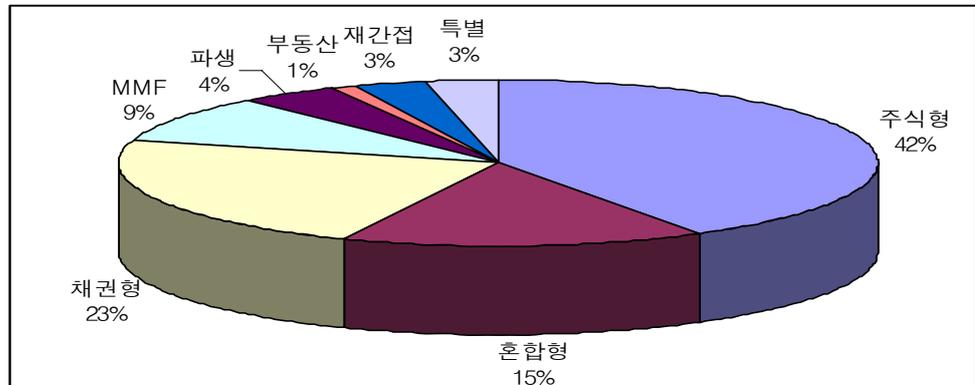
4. 운용자산규모

[2007년 12월 24일 기준 자산운용협회 공시자료]

(단위:억원)

종류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단기 금융	파생 상품	부동산	재간접	특별 자산	합계
수탁고	72,925	27,328	40,595	16,238	7,336	1,593	5,418	5,596	177,028

[유형별 운용자산규모]



**5. 운용전문인력
(펀드매니저)에
관한 사항**

성명	나이	직위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한규성	41세 (1967.12.5)	탐장 운용역	- 연세대 정치외교학, University of Connecticut MBA - 영국 머큐리자산운용사 연수 - 미국선물거래증개사, 운용전문인력 - 글로벌운용 8년 (2000년 ~ 현재)

운용현황 [2008.01.07. 기준]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자산 규모
48개	14,936억원

※ 당해 운용전문인력 기타사항 [2007.12.24일 기준]

-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운용규모 : 해당사항 없음
- 투자일임계약 운용규모 : 42억원

모투자신탁의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운용전문인력(펀드매니저)

성명	운용자산규모 [2007.12.21일 기준]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Albert NG	920만 달러	- Chinese Univ of HK, CFA, FRM -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투자경력 17년 - MEAG Hong Kong Ltd, Unicapital (Hong Kong) Limited, DBS Asse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Dresdner RCM Global Investors Asia Ltd, Daiwa Investment Advisors (HK) Limited

※ 당해 운용전문인력 기타사항 [2007.12.24일 기준]

-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운용규모 : 해당사항 없음
- 투자일임계약 운용규모 : 해당사항 없음

※운용전문인력(펀드매니저)은 자산운용회사의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교체될 수 있습니다.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구분		내용
리딩투자증권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6-1 한솔빌딩 12층 (02-2009-7000)
	연혁	- 2000.3.17 주식회사 설립 - 2000.4.14 증권업인가 취득 - 2000.9.08 증권투자회사 주식의 모집 및 판매업무 인허가 취득
	홈페이지	www.leadingkorea.com
신흥증권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3 (02-3787-2114)
	연혁	- 1955.07.26 회사 설립 (설립자본금 2백만원) - 1997.01.11 외국투자신탁증권 국내판매 대행업무 겸영 인가 - 1997.02.14 증권회사 외국환업무지정기관 지정인가
	홈페이지	www.shs.co.kr
한국투자증권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02-3276-5000)
	회사연혁	- 1974.07월 : 설립 (자본금 5억원) - 1977.04월 : 신탁형증권저축업무 개시 - 2000.06월 : 종합증권사로 전환(한국투자신탁증권) - 2000.06월 : 한국투자신탁운용 설립 - 2005.03월 : 동원금융지주 계열회사 편입 - 2005.06월 : 한국투자증권과 동원증권 통합
	홈페이지	www.truefriend.com
중소기업은행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50 (1566-2566)
	연혁	- 1961년08월 중소기업은행 설립 - 1968년04월 신탁업무 취급개시 - 2002년02월 수익증권 위탁판매업무 실시

	홈페이지	- www.kiupbank.co.kr
하나은행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01-1 (1588-1111)
	연혁	- 1959.12.01 회사설립 - 1999.07.20 판매회사 등록
	홈페이지	www.hanabank.com
한국산업은행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1588-1500)
	연혁	- 1954.04 : 한국산업은행 설립 - 1967.07 : 외국환은행업무 취급 - 1989.01 : 신탁업무 취급 - 2003.09 : 방카슈랑스업무 취급 - 2004.09 :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 취급 - 2005.01 : 수탁회사 업무 취급
	홈페이지	www.kdb.co.kr
한국외환은행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81 (1544-3000)
	연혁	- 1967년 1월 창립(자본금 100억원) - 1985년 3월 신탁업무 개시 - 1985년 7월 자본금 4,050억원으로 증자 - 1989년 12월 한국외환은행법 폐지로 특수은행에서 일반은행으로 전환 - 2004년 1월 글로벌파이낸스지 한국내 최우수 외국환은행으로 선정
	홈페이지	www.keb.co.kr

2.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1. 수익증권 판매업무(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업무)
 2. 수익증권 환매업무
 3. 수익증권 교부업무 /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지급업무와 원천징수업무
 4. 각종 장부·서류 등의 비치, 수익자 앞 제공 및 공고 업무 등 기타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규정한 업무

(2) 판매회사의 의무와 책임

□ 판매회사의 의무

①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동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② 판매회사의 임직원 및 취득권유인은 법 제57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행위준칙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판매회사의 책임

- 판매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판매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매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Ⅲ.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번지 (02-2073-7114)
회사연혁	- 2001년 11월 1일 : 합병 국민은행 출범
홈페이지	- www.kbstar.com

2.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수탁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3.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4.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5. 간접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금·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6. 무상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수령
 7.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8.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9.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수탁회사의 의무와 책임

□ 수탁회사의 의무

- 수탁회사는 수익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약관,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수탁회사의 확인사항
 1. 투자설명서가 법령, 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2. 간접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3.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4. 운용지시에 대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자산운용회사의 이행내역
 5.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다만,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가 복수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수탁회사의 책임

- 수탁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수탁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탁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신한아이타스(주)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02-2168-0400)
회사연혁	- 2000.06.15 회사 설립 - 2000.06.28 한국투자신탁운용 수익증권 사무수탁대행계약 체결 - 2001.09.16 자체사옥 입주 - 2008.07.30 신한아이타스로 사명변경

2.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1. 기준가격의 산정업무
 2. 기준가격의 통보업무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와 책임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자산운용회사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V.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채권평가(주)	KIS채권평가(주)	나이스채권평가(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층 (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유화증권빌딩 9층 (02-3770-04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43 대일빌딩 15층 (02-739-3590)
회사연혁			
- 설립일	- 2000.5.29	- 2000.6.20	- 2000.6.16
- 등록일	- 2000.7.1	- 2000.7.1	- 2000.7.1
- 자본금	- 50억원	- 30억원	- 47.5억
- 종업원수	- 43명	- 35명	- 39명
- 기 타		-한경-KIS 채권지수 발표 (2001.1.1) -증권업협회-KIS-한경기업어음지수 개발 (2002.7.2)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실시 (2002.1)

2.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채권평가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준칙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투자신탁에게 제공합니다.
 1.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평가업무를 수행할 것
 2.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할 것
 3.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평가 업무를 위하여 취득한 정보를 다른 업무의 수행에 이용하지 아니할 것
- 자산운용회사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증권의 평가가격을 제공 받는 경우 그 비용을 투자신탁에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4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I.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총회 및 의결권

(1)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이 때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 수익자총회는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의 요청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며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수익자총회 의결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투자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수탁회사의 변경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2. 잔여재산분배

-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 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간접투자재산명세서 / 간접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채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자산매매거래 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

-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재판관할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복사하거나,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인터넷홈페이지(<http://www.kitmc.com>) 또는 자산운용협회 인터넷홈페이지(<http://www.am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 영업연도의 결산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건전성·수익성 및 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 영업보고서

-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실적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이 기재된 서류

(2) 자산운용보고서

-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당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하나, 수익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수탁회사보고서

-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4) 약관변경

-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한 모든 수익자에의 통지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신탁약관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및 컴퓨터통신을 통한 1회 이상 공고
- 신탁약관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5) 기타 장부·서류

-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수탁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1) 수시공시 등

-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또는 수탁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www.kitmc.com),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합니다.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단,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거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함)
 6.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자산운용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8.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또는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2) 의결권 행사

-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2.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10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참고

펀드 용어 정리

용어	내용
개방형(간접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투자신탁보수에는 자산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일반사무관리보수 등이 있습니다. 투자신탁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설정	신탁약관에 의거하여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수탁회사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성과보수	현행 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 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약관(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능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 발생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펀드의 수익자 회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2003년 10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제정되면서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입니다.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자산운용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자산운용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종류형(간접투자기구)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가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방법은 동일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주식형(간접투자기구)	약관(정관)상 주식에 간접투자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증권투자신탁	간접투자재산의 40% 이상을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추가형(간접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하여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환매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다시 펀드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한국 인니말레이 주식투자신탁-자(1)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투자신탁명칭 : 한국 인니말레이 주식투자신탁-자(1)

판매일 : _____

투자자 확인 사항

-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환율변동 위험 포함)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 _____ 그 주요내용(환율변동 위험 포함)을
_____.

_____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